빅데이터를 활용한 주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사례(19년 11월 1주차)

2019. 11. 04. (월) / 저작권상담팀(☎ 1800-5455)



(단어의 크기가 클수록 한 주간 질의가 많이 온 것을 의미함)

- (주간 워드 클라우드)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서 한 주 동안 상담한 내용 중 가장 많이 이용된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 100개를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추출하여 시각적으로 이미지화
- (주간 주요 상담사례) 주간 워드 클라우드 중 1위부터 5위까지의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(저작물 종류별 및 기타 핵심단어 각 5개, 총 10개)와 관련한 저작권 상담사례를 요약 정리

순위	저작물 종류별	기타
1	영상	등록
2	폰트	이용
3	사진	침해
4	프로그램	제작
5	캐릭터	유튜브

※ 공유마당(https://gongu.copyright.or.kr)의 제주특별자치도 '제주한라산체' 글꼴로 작성

< 저작물 종류별 주요 상담 >

○ (영상) 해외 영상 내 스크립트(대본 등)를 번역하여 자막으로 추가하려고 한다.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?

- 타인의 영상 내 스크립트(대본 등)를 번역하여 이용하는 것은 2차적저작물[1] 작성에 해당한다. 이러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해당 스크립트(대본 등)의 저작권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.[2]
- 다만, 영화의 경우 영화제작자가 스크립트(대본 등)의 저작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외 영화 내 스크립트(대본 등)를 번역하여 자막으로 추가하려는 경우 영화제작자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다.

○ (폰트) 외주업체에 영어교재 제작을 의뢰하여 그 결과물을 PDF파일로 수령하였다. 해당 파일을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?

- 글자체(폰트 도안)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글꼴(폰트) 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.
- 글꼴(폰트) 파일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외주업체가 제작한 PDF 파일만 게시했다면 공정이용(제35조의3)에 해당할 수 있어 폰트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.[3]

○ (사진) 프로야구 시구 장면이 촬영되어 기사에 사용되었다. 시구를 한 본인은 해당 사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?

-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. 이 경우 사진을 촬영한 자

---

1) 저작권법 제5조(2차적저작물) ① 원저작물을 번역·편곡·변형·각색·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(이하 "2차적저작물"이라 한다)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.

2) 저작권법 제22조(차적저작물작성권)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.

3) 이 때 글꼴(폰트) 파일은 PDF 문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용되었고, 전체가 아닌 일부만 이용되었으며, 이러한 이용행위가 잠재적인 글꼴(폰트)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에서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. 이와 관련된 내용은 [한국저작권위원회(www.copyright.or.kr)>>자료>발간자료>조사·연구 내 '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(2019)' 사례 11번] 참조.

(언론사 등)이 저작권을 가지며, 인물사진 속 피사체(인물)에게는 저작권이 없다. 따라서 해당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의 저작권자(언론사 등)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.

○ **(프로그램) 두 명의 개발자가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양도받으려고 한다. 두 개발자 중 한 사람에게만 동의를 받아도 되는가?**

- 두 명의 개발자가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은 공동저작물[4]에 해당한다.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이 합의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고,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.[5] 따라서 두 개발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○ **(캐릭터) 유명캐릭터를 빵, 쿠키 등에 그려서 판매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가?**

- 타인의 캐릭터를 빵이나 쿠키 등에 그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좋다.

< 기타 주요 상담 >

○ **(등록) 다른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 등록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가?**

- 제3자는 저작권 등록 사이트(www.cros.or.kr)에 접속하여 [검색> 등록정보] 메뉴를 통해 간단한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. 다만, 제3자의 경우 타인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물을 열람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.

---

4) 저작권법 제2조(정의) 21.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.

5) 저작권법 제48조(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)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,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.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.

○ (이용) 공유마당에서 다운받은 음악을 영상에 이용하려고 한다. 주의할 점은?

- 공유저작물은 자유이용허락표시(CCL)저작물,[6] 만료저작물, 기증저작물, 공공저작물로 이루어져 있다. 다운받은 음악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용 조건에 따라 이용하면 된다.

○ (침해) 기념품을 제작하면서 조선시대 미술작품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?

-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. 해당 작품의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면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.
- 다만, 해당 저작물의 이용과정에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.[7]

○ (제작) 아주 오래된 시나리오를 영화로 제작하고 싶은데 작가를 찾을 수 없다. 시나리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?

-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다(저작권법 제50조).
- 법정허락의 대상 여부, 신청 수수료 및 절차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

6) 자유이용허락조건은 아래와 같다.

	저작자 표시		저작자 표시, 동일조건변경허락
	저작자 표시, 비영리		저작자 표시, 비영리, 동일조건변경허락
	저작자 표시, 변경금지		저작자 표시, 비영리, 변경금지

7) 저작권법 제14조(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) 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지 내 [사업>법정허락]에 안내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정허락 담당자(☎055-792-0085)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○ **(유튜브) 요리책을 보고 레시피를 따라 요리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게시하려고 한다. 이 경우 레시피의 출처를 영상에 표시하기만 하면 적법한 이용방법이라 볼 수 있는가?**

- 요리 레시피 자체는 아이디어에 해당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다. 따라서 레시피를 보고 요리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다만, 요리책에 나온 음식 사진이나 설명 문구[8] 등을 그대로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한다.

※ 공유마당의 서울시 '서울한강체L' 글꼴로 작성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 사례(19년 11월 1주차)저작물은 "공공누리"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8) 요리책에 기재된 설명 문구라고 하여 요리 재료, 요리 순서와 같은 간단하고 짧은 설명이 모두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. 음식의 맛이나 분위기 등을 표현한 창작성 있는 표현만 저작권법상 보호된다.